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#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5년 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6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생애 도민 교육지원 등 교육정책지원 일원화를 위해 충북 교육정책 거점기관인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와 통합(신규위탁)하면서, 그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운영을 위한 도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### □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

- 대 상 :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

- 사용기관 :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- 재산위치: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, 충북연구원
- 사용면적: 건물 133.22㎡ ※ 충북연구원 연면적 5437.56㎡
- 감면내역: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
- 적용시기: 2025. 2. 1. ~ 2025. 12. 31.
-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
 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 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 제5항 제2의2호

**【참고】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**

- 개 소 일: 2023. 1. 1.
- 설립목적
  - 지역 우수 인재발굴·양성과 평생교육진흥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충청북도  
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
- 주요사업
  -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  - 우수인재 발굴사업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  -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·연구·조사
  -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인재양성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임, 위  
탁하는 사업 등

○ 인 원

| 구 분 | 계  | 원 장 | 본부장 | 직 원 | 비 고 |
|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정 원 | 23 | 1   | 1   | 21  |     |
| 현 원 | 21 | 1   | 1   | 19  |     |

※ 충북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직원은 정원 외 운영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,

- 기존 충북연구원 지정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(이하 “충북RISE센터”)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충북인평원”)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직이 변경되었고,
- 이에 따라 충북인평원이 충청북도 소유 충북연구원 건물을 충북RISE센터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○ 충북인평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은 충북연구원 3개실 133.22㎡로, 구체적으로는 1층 103호 81.12㎡, 1층 105호 34.22㎡, 2층 209호 17.88㎡으로, 사용기간은 2025. 2. 1.\*부터 2025. 12. 31.까지임.

\* 충북RISE센터 지정 변경일(충북연구원 → 충북인평원)은 2025. 1. 1.로 현재는 유상으로 사용 중임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는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○ 한편 충북RISE센터를 충북인평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은 도의 인재양성, 평생교육, 대학지원 등의 교육 분야 기능을 통합하고, RISE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체계적 운영시

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, RISE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, 특별한 이견 없음.